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52-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 지상 25층 2개동, 총 131세대 중 일반공급 아파트 131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공급대상

(단위 : m)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기타 공용면적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59	59.8070	20.5870	80.3940	4.3590	30.5650	115.3180	32.1790	86	8	8	17	2	8	43	43	4
72	72.1350	24.2710	96.4060	5.2580	36.8650	138.5290	38.8120	45	4	4	9	1	4	22	23	2
								131	12	12	26	3	12	65	66	6

※ 상기 면적은 사업승인 및 설계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세대

주택 구분	약식 표기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비 고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주택	59㎡	86	8	8	17	2	6	41	45	
	72㎡	45	4	4	9	1	3	21	24	

■ 기관별 세대

주택 구분	약식 표기	기관별 배정 세대수(예비자)						합 계	비 고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장기복무 세대군인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민영주택	59㎡	1(3)	1(3)	2(6)	2(6)	2(6)	8(24)		
	72㎡	1(3)	1(3)	1(3)	1(3)	-	4(12)		

※ 상기 기관별 배정 세대수(예비입주자)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여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 자격제한 등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 본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에도 불구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 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 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분양 일정(예정)

모집공고일	건분주택 오픈	특별공급 신청일	당첨자 발표일	공급계약
2021.12.24.(금)	2021.12.24.(금)	2022.01.03.(월)	2022.01.12.(수)	2022.01.25.(화) ~ 01.27.(목)

※ 상기 청약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건분주택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계양구청의 행정지침에 따라 사이버 건분주택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건분주택 : www.계양동도센터리움.com)